

11. 韓國土地開發公社法中改正法律

法律 第5,109號 1995.12.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 “2조원”을 “5조원”으로 한다.

제6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이용관리법·택지소유상한에 관

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유통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자
료의 조사·작성과 그 용역의 제공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
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
지 제5호의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
는 업무

제12조 제3항중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
지 또는 공업용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때
에는 건설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
고, 종전의 제2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3조(토지의 공급)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
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야 한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익사업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공업용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
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기
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
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
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건설부장
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
로 한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며,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22조로 하며, 종전의 제22조를 제19조의2로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제20조의 제명을 “용지보상등의 위탁”으로 하여 이를 제20조의2로 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여 동조를 제19조로 한다.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건설등의 허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사용의 승인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공사는 제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 제1항·제21조의12 제1항·제21조의14 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제68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및 제6조 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 제32조의2 제1항, 제33조 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5항중 본문중 “한국토지개발

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한국토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7조 제1항중 “한국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⑫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내지 제22조”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⑯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 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⑰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은 이를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법 제1조).
-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 5조원으로 증액함(법 제4조).
- 다. 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법 제9조).
- 라.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법 제21조).

〈법제처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